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자에 대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비를 합산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3. 10. 10. ~ 11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1회의”를 “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비용”을 “발생한 외래진료 비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회의 입원진료, 동일한 질환, 일련의 치료과정의 범위,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”를 “재난적의료비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질환별 입원진료”를 “입원진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난적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재난적의료비) ① (생략)	제3조(재난적의료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<u>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(이하 이 항에서 “의약품등구입비용”이라 한다)</u>	1. <u>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-----</u> ----- ----- -----
2. <u>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</u>	2. ----- -- <u>발생한 외래진료 비용</u> --- ----- -----
3. <u>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일련의 치료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원진료·외래진료 비용 및 각각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</u>	<삭 제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1회의 입원진료, 동일한 질환, 일련의 치료과정의 범위,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 제11조(지원기준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. 1. <u>질환별 입원진료</u>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2. (생략)	③ ----- ----- <u>재난적의료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11조(지원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입원진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64